

	교직원 복지 및 직무역량개발 지원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6. 07. 12.
		최종개정일자	2020. 1. 31.
		담당부서	행정지원처

제1조(목적)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.)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직무역량개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대학의 교직원에 한한다.

제3조(복지의 범위와 종류) ① 복지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교직원 본인 및 직계자녀의 본 대학 입학 시 등록금 지원
 2. 교직원 직계자녀의 고등학교 교육비 보조
 3. 교직원 체력단련 시설 지원
 4. 본 대학 비학위과정 수강료 할인혜택
 5. 하계, 동계방학중 교직원 중식비 지원
 6. 본 대학 게스트 하우스 사용지원
 7. 교직원 친화회 체육대회 지원
 8. 교직원 경조사 지원
 9. 장기근속자 표창 및 포상
 10. 우수직원 및 우수학과 표창 및 포상
 11. 정년퇴임 예정 교직원에 대한 표창 및 포상
 12. 목포중앙병원 건강검진 및 진료비 할인혜택
 13. 교직원 동·하계 연수 지원
 14. 추석·설날 등 기타 기념일 선물 지원
 15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 지원
-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조(직무역량개발의 범위와 종류) 교직원의 직무역량 및 자기개발 교육 지원은 “교직원복무 규정” 제3장 출장에 따라 지원한다.<개정 2020.1.31>

① 직무역량개발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교직원의 직무 및 자기개발 관련 교육훈련 지원<개정 2020.1.31>
2. 교직원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 지원<개정 2020.1.31>
3. 직원의 서비스 매너 및 인성교육 지원
4. 교원의 직무관련 학술대회 지원
5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지원

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보칙)

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